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신종 MMF(S-29 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5 월 07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
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3%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3%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(전년도와 산출값 동일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신종 MMF(S-52 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5 월 07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 집합투자기구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에 관한 사항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3%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4%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[변경전 1]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[변경후 1]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[변경전 1]

(4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%(또는 15%) 세액공제

② 과세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: 연금인출,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

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'과세제도안내'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변경후 1]

(4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블루칩바스켓증권투자신탁(V-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4. (생략) 15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4. (현행과 동일) 15. 종류 S-P2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 ~ 14. (생략) 15.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14. (현행과 동일) 15. 종류 S-P2 수익증권
제 39 조(투자신탁보수)	③ (생략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W 수익증권] (생략) <신설>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W 수익증권] (현행과 동일) [종류 S-P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

		4.4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7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

		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5 월 07 일 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61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3.93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**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**

<table>
<tr>
<td>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(2) 종류별 가입자격
<신설></td>
<td>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 S-P2</td>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생략)
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(생략)
<신설>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선취/후취판매, 환매수수료</th></tr>
<tr><td>S-P2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td>없음</td></tr>
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
<table>
<tr><th colspan="6">종류형 명칭</th></tr>
<tr><td colspan="6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수탁회사보수</td><td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d><td>총 보수</td></tr>
<tr><td>0.4446</td><td>0.17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0.6726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(업데이트)
<table>
<tr><th colspan="5">종류형 명칭</th></tr>
<tr><td colspan="5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1 년</td><td>2 년</td><td>3 년</td><td>5 년</td><td>10 년</td></tr>
<tr><td>69</td><td>141</td><td>217</td><td>381</td><td>867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전 1]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후 1]</td>
</tr>
<tr>
<td>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</td>
<td>(생략)</td>
<td>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[변경전 1]

(6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공제제도	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한도	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연금외 수령시과세 (통상적인 경우)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연금외 수령시과세 (부득이한 경우)	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*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,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.

[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해지가산세	5 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.2%
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	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, 퇴직, 해외이주, 폐업

	저축자의 3 개월 이상 치료,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해지가산세 없음
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	연금소득 5.5%(종합과세 가능)

* '13.1.1~'13.2.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
(단,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.5% 과세)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7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(2014.1.1 부터)

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「소득세법」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과세이연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

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후 1]

(6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• 천재지변 •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・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•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・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7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종류 C-P2, 종류 S-P2 수익증권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8. (생략) 19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8. (현행과 동일) 19. 종류 S-P2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 ~ 18. (생략) 19.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18. (현행과 동일) 19. 종류 S-P2 수익증권
제 39 조(투자신탁보수)	③ (생략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C-P2E 수익증권] (생략) <신설>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C-P2E 수익증권] (현행과 동일) [종류 S-P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4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0

		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

	(생략)	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5 월 07 일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S-P2</td>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선취/후취판매, 환매수수료</th></tr><tr><td>S-P2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td>없음</td></tr>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비용
(생략)
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신설></td>
<td>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<table><tr><th colspan="5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5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h>집합투자업자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/tr><tr><td>0.7446</td><td>0.20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1.0026</td></tr></table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<tr><th colspan="5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5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h>1 년</th><th>2 년</th><th>3 년</th><th>5 년</th><th>10 년</th></tr><tr><td>103</td><td>211</td><td>324</td><td>568</td><td>1,292</td></tr>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전 1]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후 1]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[변경전 1]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공제제도	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
연금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 한도	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연금외 수령시 과세 (통상적인 경우)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연금외 수령시 과세 (부득이한 경우)	연금소득세 5.5~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

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700 만원 한도까지 12% 세액공제됩니다. 다만,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과세이연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

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퇴직연금제도의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후 1]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종류 C-PE 수익증권 가입자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• 천재지변 •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・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•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・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종류 C-P2, 종류 C-P2E, 종류 S-P2 수익증권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PowerUp 블루칩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0 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~6.(생략)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("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"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1.고객의 성명 및 주소 2.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~6.(종전과 동일)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(이하 "수익증권고객계좌부"라 한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1. 고객(이하 "투자자"라 한다)의 성명 및 주소

	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("실질수익자"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,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	2.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(삭제) ④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
제 11 조(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)	(생략)	(삭제)
제 12 조(수익증권의 재교부)	(생략)	(삭제)
제 13 조(수익증권의 양도)	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.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.	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제 14 조(수익자명부)	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실질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실질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	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(삭제)

	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	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	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
제24조(수익증권의 판매)	②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	②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
제 26 조(수익증권의 환매)	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⑥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	④(삭제) ⑤(삭제) ⑥(삭제)
제 27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2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
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	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(ㅁㅁ)하여야 한다.	④(삭제)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48조(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)	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 1.소각	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		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		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5 월 07 일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제 2 부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
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(생략)	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가. 자집합투자기구** (1) 투자대상 (3) 기타 제한 사항 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-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(1) 투자대상 하나 UBS 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7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하나 UBS 단기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 6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가. 자집합투자기구** (1)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(3) 기타 제한 사항 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-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(1)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하나 UBS 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7.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하나 UBS 단기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 6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

	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	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57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7.65%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 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**나. 과세**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**나. 과세**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

		있습니다.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China 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7. (생략) 18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7. (현행과 동일) 18. 종류 S-P2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 ~ 17. (생략) 18.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17 (현행과 동일) 18. 종류 S-P2 수익증권
제 39 조(투자신탁보수)	③ (생략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W 수익증권] (생략) <신설>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W 수익증권] (현행과 동일) [종류 S-P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9.5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8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6

		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5 월 07 일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S-P2</td>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선취/후취판매, 환매수수료</th></tr><tr><td>S-P2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td>없음</td></tr>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(생략)
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신설></td><td>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<table><tr><th colspan="5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5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수탁회사보수</td><td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d><td>총 보수</td></tr><tr><td>0.9500</td><td>0.1800</td><td>0.0600</td><td>0.0180</td><td>1.2080</td></tr></table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<tr><th colspan="5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5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h>1 년</th><th>2 년</th><th>3 년</th><th>5 년</th><th>10 년</th></tr><tr><td>124</td><td>254</td><td>390</td><td>684</td><td>1,557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전 1]</td>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후 1]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[변경전 1]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C-PE 수익증권 가입자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연간 저축금액(최대 400 만원 한도)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- 단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의 제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
해지가산세	없음
부득이한 연금외수령	천재지변/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부득이한 연금외수령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2, C-P2E 수익증권 가입자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**세액공제** :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 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
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**과세이연** 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**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** :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[변경후 1]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종류 C-PE 수익증권 가입자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• 천재지변 •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・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•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・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종류 C-P2, 종류 C-P2E, 종류 S-P2 수익증권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8. (생략) 19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8. (현행과 동일) 19. 종류 S-P2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 ~ 18. (생략) 19.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18. (현행과 동일) 19. 종류 S-P2 수익증권
제 39 조(투자신탁보수)	③ (생략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CG 수익증권] (생략) <신설>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CG 수익증권] (현행과 동일) [종류 S-P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9.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8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5

		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5 월 07 일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S-P2</td>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선취/후취판매, 환매수수료</th></tr><tr><td>S-P2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td>없음</td></tr>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(생략)
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신설></td><td>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<table><tr><th colspan="5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5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수탁회사보수</td><td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d><td>총 보수</td></tr><tr><td>0.90</td><td>0.18</td><td>0.05</td><td>0.02</td><td>1.15</td></tr></table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<tr><th colspan="5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5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d>1 년</td><td>2 년</td><td>3 년</td><td>5 년</td><td>10 년</td></tr><tr><td>118</td><td>242</td><td>372</td><td>651</td><td>1,482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전 1]</td>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후 1]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[변경전 1]

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종류 C-PE 수익증권 가입자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공제제도	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한도	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연금외 수령시 과세 (통상적인 경우)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연금외 수령시 과세 (부득이한 경우)	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6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(2014.1.1 부터)

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과세이연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

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후 1]

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종류 C-PE 수익증권 가입자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• 천재지변 •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・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•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・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종류 C-P2, 종류 C-P2E, 종류 S-P2 수익증권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미국토탈일드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6 (생략) 17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6. (현행과 동일) 17. 종류 S-P2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 ~ 16. (생략) 17.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16. (현행과 동일) 17. 종류 S-P2 수익증권
제 39 조(투자신탁보수)	③ (생략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CG 수익증권] (생략) <신설>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CG 수익증권] (현행과 동일) [종류 S-P2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연 1000 분의 2.0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9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

		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5 월 07 일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S-P2</td>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선취/후취판매, 환매수수료</th></tr><tr><td>S-P2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td>없음</td></tr>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(생략)
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(생략)
<신설></td>
<td>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

<table><tr><th colspan="6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6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th>합성총보수비용</th></tr><tr><td>0.200</td><td>0.190</td><td>0.030</td><td>0.020</td><td>0.440</td><td>1.080</td></tr></table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(업데이트)
<table><tr><th colspan="5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5">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h>1 년</th><th>2 년</th><th>3 년</th><th>5 년</th><th>10 년</th></tr><tr><td>111</td><td>227</td><td>349</td><td>612</td><td>1,392</td></tr>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전 1]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후 1]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[변경전 1]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공제제도	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한도	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연금외 수령시 과세 (통상적인 경우)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연금외 수령시 과세 (부득이한 경우)	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*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,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.

[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해지가산세	5 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.2%
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	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, 퇴직, 해외이주, 폐업 저축자의 3 개월 이상 치료,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
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해지가산세 없음
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	연금소득 5.5%(종합과세 가능)

* '13.1.1~'13.2.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
(단,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.5% 과세)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(2014.1.1 부터)

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과세이연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

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후 1]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C-PE 수익증권 가입자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• 천재지변 •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・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•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・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종류 C-P2, C-P2E, 종류 S-P2 수익증권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(UH)[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3. (생략) 14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3. (현행과 동일) 14. 종류 S-P2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 ~ 13. (생략) 14.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13. (현행과 동일) 14. 종류 S-P2 수익증권
제 39 조(투자신탁보수)	③ (생략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CG 수익증권] (생략) <신설>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A 수익증권]~[종류 CG 수익증권] (현행과 동일) [종류 S-P2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0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10

		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

	(생략)	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신설>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S-P2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5 월 07 일
- 종류 S-P2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S-P2</td>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선취/후취판매, 환매수수료</th></tr><tr><td>S-P2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td>없음</td></tr>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비용
(생략)
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(생략)
<신설></td>
<td>비용
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

<table><tr><th colspan="6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S-P2</td><td colspan="4"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th>합성총보수비용</th></tr><tr><td>0.30</td><td>0.11</td><td>0.04</td><td>0.02</td><td>0.47</td><td>1.02</td></tr>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(업데이트)
<table><tr><th colspan="5">종류형 명칭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S-P2</td><td colspan="3"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</td></tr><tr><th>1 년</th><th>2 년</th><th>3 년</th><th>5 년</th><th>10 년</th></tr><tr><td>105</td><td>214</td><td>330</td><td>578</td><td>1,315</td></tr>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전 1]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후 1]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[변경전 1]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C-PE 수익증권 가입자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연간 저축금액(최대 400 만원 한도)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- 단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
분리과세한도	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의 제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
해지가산세	없음
부득이한 연금외수령	천재지변/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부득이한 연금외수령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2, C-P2E 수익증권 가입자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

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 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
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과세이연 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후 1]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C-PE 수익증권 가입자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• 천재지변 •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・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•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・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종류 C-P2, C-P2E, 종류 S-P2 수익증권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